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2조(정의)

1. 계약 제품이란 옵티컬트랜시버(Optical Transceiver)로 구성된 광 모듈을 기반으로 한 AOC(Active Optical Cable) 제품을 말한다.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 나.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 다.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3)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쌍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및 그 원인에 관한 감정(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는 ① 모든 채널 단자가 오픈되어 전체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1유형), ② 4개 중 일부 채널 단자가 오픈되어 해당 특정 채널의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2유형), ③ 모든 채널 단자가 정상이나 특정 채널의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3유형) 등 3가지 유형의 하자가 나타나는데, 제1, 2유형의 하자원인은 전기부의 본딩 와

이어 통전불량으로서, 볼 리프트(Ball Lift) 즉 본딩 부분 볼이 패드에서 들뜨는 현상 때문이고, 제3유형의 하자 원인은 광학정렬불량 즉 광섬유와 렌즈, 광다이오드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인은 볼의 들뜸 현상은 와이어 본딩 설비의 조건이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최적화하지 못한 상태로 본딩이 수행되었거나, 패드표면의 세척 단계에서의 부주의로 패드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광학정렬불량 또한 광섬유와 렌즈, 광소자를 정밀하게 정렬한 후 조립된 패키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는 조립공정상의 하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위 제3유형 시료들의 경우 현재는 볼이 제 위치에 접합되어 있어 일응 전기부의 통전은 양호하나, 볼과 패드와의 접합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볼이 패드표면에 매우 약하게 붙어 있는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향후 열 충격 또는 기계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 진행성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다) 위 인정사실을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3, 15, 16,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에는 원고의 조립공정상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이른바 '진행성 불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제품 중 현재까지 불량 발생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모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라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제3자에게 판매되지 못한 채 원고 또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 및 이 사건 제품의 불량 문제를 수습하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 기간 제한 적용 안됨

1) 상법 제69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에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